#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구자근·장동혁·박덕흠

권영세 · 강대식 · 박준태

김성원 · 김선교 · 김석기

성일종 · 조지연 · 신동욱

강명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 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 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 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 법률 제 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구미시
변교 이 즈 데그키바버이라 이 디스코 가시 치다.	

별표 2 중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구		청 도	청도읍
		영 천	영 천 시
		칠 곡	왜 관 읍
		경 산	경 산 시
	서 부	성 주	성주읍
	서 부	고 령	고령읍
	안 동	영 주	영 주 시
	안 동	봉 화	봉 화 읍
	상 주	예 천	예 천 읍
	상 주	문 경	문경시
	의 성	청 송	청송읍
	의 성	군 위	군위읍
	영 덕	울 진	울 진 읍
	영 덕	영 양	영 양 읍

별표 3 중 대구고등법원란의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구 대 구	대구광	방역시 중구	・동구・남극	ア・북구・수성	구 •
---	-------	-----	--------	--------	---------	-----

	영천시 • 경산시 • 칠곡군 • 청도군
서 부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 령군
안 동	안동시 • 영주시 • 봉화군
경 주	경주시
포 항	포항시・울릉군
김 천	김천시
구 미	구미시
상 주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의 성	의성군・군위군・청송군
영 덕	영덕군・영양군・울진군

별표 7 중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구		청 도	경상북도	청도군
		영 천	경상북도	영천시
		칠 곡	경상북도	칠곡군
		경 산	경상북도	경산시
	서 부	성 주	경상북도	성주군
	서 부	고 령	경상북도	고령군
	안 동	영 주	경상북도	영주시
	안 동	봉 화	경상북도	봉화군
	상 주	예 천	경상북도	예천군
	상 주	문 경	경상북도	문경시
	의 성	청 송	경상북도	청송군
	의 성	군 위	경상북도	군위군
	영 덕	울 진	경상북도	울진군
	영 덕	영 양	경상북도	영양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25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5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